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기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6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6월 10일

발 의 자 : 박기열·박진형 의원(2명)

찬 성 자 : 김태수·유동균·김희걸·조상호·
이정훈·최영수·이현찬·조규영·
김생환·서영진·문형주·김미경·
이순자·김문수·신원철·김종욱·
박준희·김선갑·김광수(도봉)·
오봉수·양준욱·박운기 의원(22명)

1. 제안 이유

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¹⁾ 대기환경 개선,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

또한 전기자동차는 2015년 한해에만 전세계적으로 55만여대가 보급되는 등 최근 보급이 급속하게 성장되고 있으나, 국내 총 보급대수는 2015년말 현재 5,712대²⁾에 불과한 실정이며 서울시는 이중 약 20%인 1,195대를 보급하였음

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의 선결 요건인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효과성 높은 제도와 정책이 필요함

1) 내연기관 총괄에너지효율 17%, 전기차총괄에너지효율 37%(미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연구소)

2) SNE Reserch(해외) 및 국토교통부 통계누리(국가)

2016년 1월 『주차장법』 및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의 일부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,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하여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충전기 설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『주차장법』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(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)
- 나. 『주차장법』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함(안 제23조의3 및 별도4 신설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
 - 『주차장법』 및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“전기자동차”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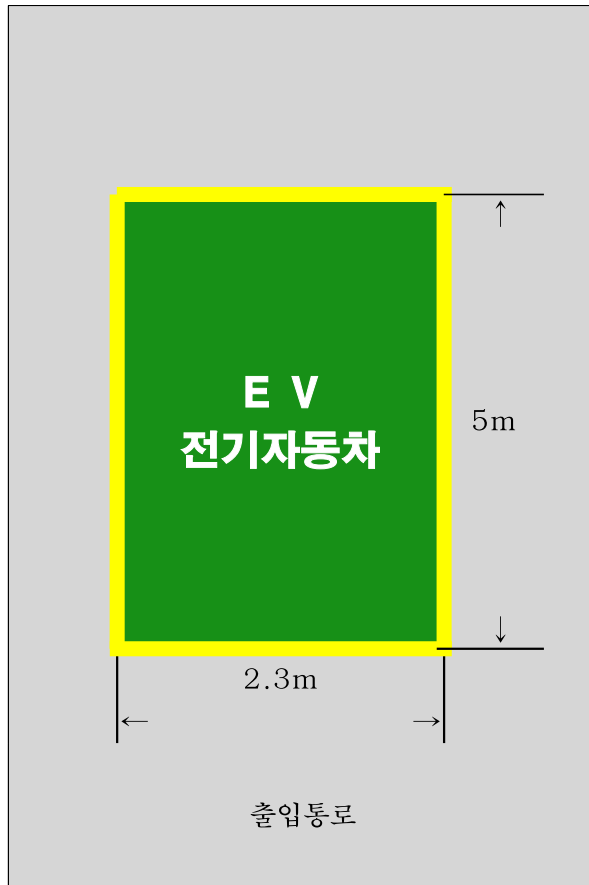
제25조의3(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(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)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,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, 총 주차대수의 3% 이상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.
-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

별도 제4호 서식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〈별도 제4호 서식〉 (개정 2016. 4. .)

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(제25조의3제3항 관련)



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(제25조의3제3항 관련)

- 비 고 -

1.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3m이상×세로 5m이상)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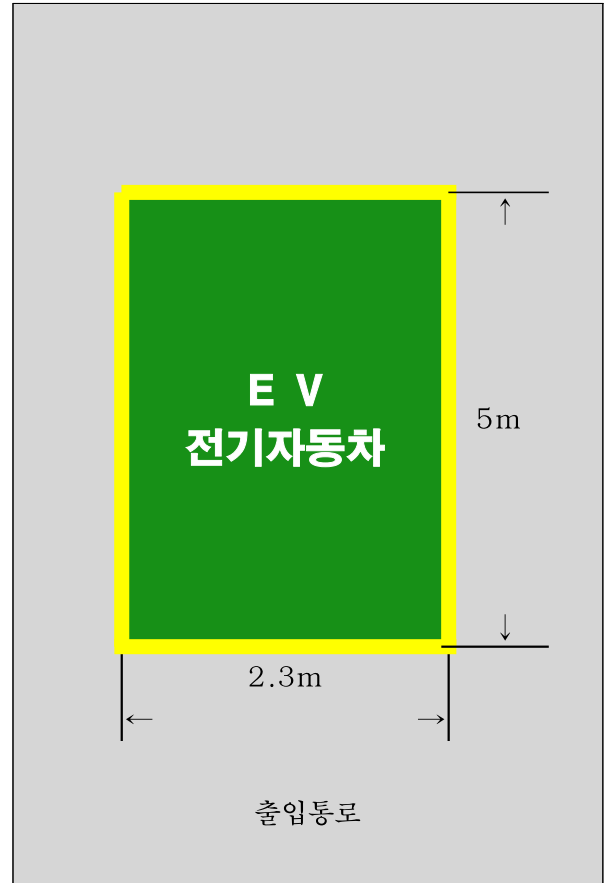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전기자동차”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</p> <p>제25조의3(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) ①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(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)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,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, 총 주차대수의 3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.</p> <p>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도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</p>

〈신설〉〈별도 제4호 서식〉(개정 2016. 4. .)

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(제25조의3제3항 관련)



- 비 고 -

1.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3m이상×세로 5m 이상)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박기열